

제 1조 시즌권의 정의

- ① 시즌권은 엘리시안 강촌(이하 “회사”)에서 스키 또는 보드 애호가의 편의를 위해 정상적인 가격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특별스키상품을 의미합니다.
- ② 시즌권 고객(이하 “고객”)이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“회사”에 시즌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소지하는 모든 권종의 시즌권 소지자를 말합니다.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만 시즌권의 효력이 유효합니다.
- ③ 본 시즌권으로 눈썰매장 이용은 불가합니다.

제 2조 시즌권의 사용기간 및 적용

- ① 시즌권은 2022/2023 동계시즌(2022년 스키장 개장일~2023년 폐장일)동안 리프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스키장 이용시간은 “회사”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② 시즌권의 사용기간은 “회사”의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70일 동안으로 하며,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하여 양도,양수, 환불이 불가합니다. 이는 고객에 대한 편의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- ③ 동계시즌 중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, 기상여건(강풍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등), 사회재난, 정부의 지침[전염병, 감염병 등 관련 명령(집합금지 등), 이용제한, 시설폐쇄 등]과 리프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전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 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, “회사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④ 시즌권별 이용가능 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.

구분	전일권	주중권	야심권
이용시간	정설시간을 제외한 스키장 슬로프 운영시간중	월~목요일 : 09:00~24:00 금요일 : 09:00~03:00 *주중 공휴일 이용 가능	일~목요일 : 18:30~24:00 금~토요일 : 18:30~03:00
운영시간	*일~목요일 : 09:00~24:00 *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일 : 09:00~03:00 *정설시간 : 17:00~18:30		

제 3조 “고객”의 자격 및 권리

- ① “고객”은 “회사”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, 반드시 시즌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리프트 탑승 전 시즌권을 제시하여야만 “고객”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시즌권은 “고객”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, 미지참 시에는 “고객” 혜택을 이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인정 확인하기 위해서 “회사”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② “고객”은 본인의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, “회사”는 재발급 및 리프트 무료이용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“고객”은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③ “고객”은 구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표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 “회사”가 지정하는 검표원은 상황에 따라 “고객”의 선글라스, 마스크, 모자(헬멧, 비니 등) 등의 안전 보호장비 탈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고객”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.
- ④ 시즌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대용할 수 없으며, 적발 시 즉시 회수되며 그 효력을 상실함과

동시에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.

- ⑤ “고객”이 사정상 유효기간 중에 “고객”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약관상 양도·양수규정 및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- ⑥ 시즌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“회사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“회사”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 이 때, 소정의 재발급 비용은 “고객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⑦ 시즌권 분실하였을 경우, 신고 이전에 “고객” 본인의 귀책사유(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)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“고객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⑧ 다음의 경우 “고객”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.
 - 가. “고객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
 - 나. 시즌권을 타인에게 불법양도, 대여, 매매한 자
 - 다. 규정된 본인 사진 등 필수 서류 제출 거부 및 위조 제출한 자
 - 라. 본인 및 타인의 시즌권을 불법으로 위조한 자
 - 마. “고객”의 귀책사유로 “회사”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
 - 바. 시즌권 검표에 비협조하는 자
 - 사. “회사” 이용 중 다른 “고객”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·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여 “회사”의 방문 및 혜택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제 4조 시즌권의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

- ①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“고객”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② 시즌권 부정사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시즌권을 이용자 본인 이외의 제 3자가 이용한 경우
 - 나. “회사”가 발급한 기준년도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
 - 다. 시즌권의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
 - 라. 양도 및 환불이 불가능한 시즌권을 양도·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
 - 마. 타인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경우
- ③ 시즌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회수/폐기/사용정지 처리되며, 부정사용의 귀책사유가 있는 “고객”은 시즌권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“회사”가 “고객”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.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“회사”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④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,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며, 시즌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 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에 의거 고객은 그에 대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
- ⑤ 시즌권 분실, 멸실의 경우 “고객”은 반드시 시즌권 데스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,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“고객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⑥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불법적으로 양도, 판매하는 행위 및 부정판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,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시즌권은 사용정지/회수/폐기 처리되며 원상복구 되지 않습니다. 이로

이하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“고객”은 “회사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- ⑦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는 시즌권은 즉시 회수되거나 천공되어 그 사용권이 멸실됩니다. (재발급 불가)
- ⑧ 시즌권 부정 및 불법 사용으로 “회사”에 손해를 끼친 “고객”은 향후 5년간 시즌권 구매가 불가합니다.
- ⑨ 각 항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입하신 “고객”에게 귀속됩니다.

제 5조 시즌권의 재발급

- ① 시즌권이 분실·멸실·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발급 허용은 유효기간 중 1회로 한정합니다.
- ② 시즌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분실·멸실·훼손 신고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 재발급 수수료는 22,000원입니다.
- ③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 시 “고객”은 즉시 “회사”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, “회사”는 24시간의 유예 기간 경과 후 시즌권을 재발급해 드립니다.
- ④ “고객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“회사”는 시즌권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⑤ “회사”의 과실로 인하여 시즌권을 분실·멸실·훼손한 경우 “회사”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즌권을 재발급해 드립니다.
- ⑥ 분실된 시즌권은 사용 정지되며,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 사용은 불가하며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.

제 6조 시즌권의 양도_양수

- ① 시즌권의 양도·양수는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며, 양도·양수자의 신분증 사본, 양수자의 구비서류(신상명세, 사진 등)를 지참하시고, 시즌권 반납후 양도·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② 이후 시즌권의 양도·양수와 관련하여 비용(시즌권 구매 시점에 따른 차액과 양도수수료)을 납입하여야 최종 양도·양수가 완료됩니다.
 - 가. 차액 : 양도자가 시즌권을 최초 구입한 금액과 양수자가 구매하려는 시점의 시즌권 금액과의 차이를 지칭합니다.
 - 나. 양도수수료 : 시즌권 발급비용으로 22,000원입니다.
- ③ 양도·양수는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70일까지만 가능합니다. 70일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되어 양도·양수가 불가능 합니다.
- ④ “고객”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시즌권 양도자가 사용을 다 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는 “고객”의 권리를 “회사”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⑤ 다음의 시즌권 상품은 특별상품으로서 양도·양수가 불가능 합니다.
 - 가. 경품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발급된 무료/할인 시즌권
 - 나. 분양회원에게 발급된 시즌권

다. 1개월시즌권, 2개월시즌권, 장비렌탈전용/강습전용시즌권 등 특별시즌권

- ⑥ ‘패밀리 전일권’은 13세 이하의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상품으로서, 발급 이후 사용 중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 단, 양도·양수는 시즌권 약정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호자 또는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양수가 가능한 자녀의 경우는 13세 이하의 직계 자녀야 하며, 보호자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법적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. 양도·양수 관련 비용은 본조 2항과 같습니다.

제 7조 시즌권의 환불

- ① “회사”에서 판매한 시즌권 전체 상품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“고객”의 사정에 의한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하며, 유효기간 후 환불 요청이나 차기 시즌 이월은 불가능합니다.
- ② “고객”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발급수수료와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발급수수료 : 22,000원(시즌권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)
- 나. 위약금(소비자 분쟁해결 기준)
- ㄱ. 직영(리조트 현장 및 엘리시안 쇼핑몰) 구매 시, 시즌권 구매금액의 10%
- ㄴ. 대행(외부 쇼핑몰) 구매 시, 시즌권 구매금액의 20%
- ③ 시즌권이 제작 및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전 “고객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 또한 1개월 시즌권 및 2개월 시즌권은 스키장 개장과 상관없이 해당 시즌권 유효사용 개시일 이전 “고객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- ④ 시즌권이 제작되어 발급된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전 “고객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발급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하여 드립니다. 단, 고객이 시즌권을 수령하였을 경우, 반납을 한 이후에 환불이 진행됩니다.
- ⑤ 시즌권이 제작되어 발급된 상태에서 스키장 개장 후 “고객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위약금 및 발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잔액에서 선공제한 잔액기준 총 사용일수(70일)로 나눈 금액을 환불요청일(시즌권 반납일)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. 단, 심야전용 시즌권 구매고객은 심야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양도·양수는 가능합니다.

환불금 = 구매금액 - (위약금 + 발급수수료) - [(구매금액 - (위약금 + 발급수수료)) /

70일×시즌권이용일수]

○ 시즌권 이용일수는 시즌권 수령일로부터 환불요청일(반납일)까지의 누계 일자

○ 단, 스키장 개장 이전 시즌권을 수령하신 고객은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일(반납일)까지의 누계 일자에 맞춰 적용

- ⑥ 시즌권 구매시 제공되는 부가혜택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적용된 혜택(할인금액 등)도 제6항의 환불액에서 차감, 공제됩니다.

- ⑦ 스키장 개장 이후 70일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
- ⑧ 1개월시즌권 및 2개월시즌권은 유효사용 개시일 이후 2일이내에 “고객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에서 위약금(10%) 및 발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잔액에서 리프트+렌탈 4시간이용권의 정상요금기준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. 단, 유효사용 개시일 3일이후에 “고객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, 해당시즌권을 미사용한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,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
- ⑨ 다음의 시즌권 상품은 특별상품으로서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
 - 가. 경품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발급된 무료/할인 시즌권
 - 나. 분양회원에게 발급된 시즌권
 - 다. 장비렌탈전용 및 강습전용시즌권 등 특별시즌권

제 8조 손해배상

- ① “회사”의 시설물에 의해 “고객”에게 신체상,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“회사”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“고객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.
- ② “고객”의 귀책사유로 “회사”의 시설물 파손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고객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 9조 면책조항

- ① “회사”는 천재지변, 행정관청의 규제, 긴급한 안전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“고객” 혜택의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“고객”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 “고객”은 “회사”에 대하여 가입비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③ “고객”이 제1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해 드립니다.

제10조 기타(약관 변경 및 분쟁조정 외)

- ① 본 약관의 내용은 “회사”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단,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“회사”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(www.elysian.co.kr)를 통해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“고객”에게 공지하며, “고객”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②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.
- ③ 시즌권 구입자의 개인 신상 정보는 필요 시 일부 공유될 수 있습니다. (사고 등).
- ④ 본 시즌권 구입 시 당사에 제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

있는것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11조 시행일

본 약관은 2022/2023 시즌권 판매 시작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